

『2016년도 세출예산 영남대학교 출연 계획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2016년도 세출예산 영남대학교 출연 계획

- 출연 예정액 : 금200백만원
- 출연 필요성
 -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향토생활관에 입주시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학업분위기 조성
- 출연근거법령 : 「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교육기본법」 제27조

○ 입법예고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영남대학교 내 향토생활관에 입주시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2009년(3억출연, 입사권 30명)에 이어 2016년도에 2억원을 추가 출연, 입사권 20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지역을 선도하는 유능한 인재양성을 도모하고 학생, 학부모의 대학생활 불안감 해소 및 학생이 학업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2016년도 세출예산 2억원을 영남대학교 향토생활관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남대 향토생활관은 출연금 1천만원당 학생 1인의 입주권이 부여되어 2억원 출연 시 20명의 입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미시는 2009년 3억원을 출연하여 현재 30명의 입사생을 지원하고 있음. 아울러 영남대학교 2015년도 구미출신 학생의 향토생활관 접수인원은 149명이며 학생 수는 1,132명에 달하고 있음. 이에 지역 우수인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학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